

October 20,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6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10. 12. ~ 10. 16.)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확정

2020. 10. 12.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본격 육성, ②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으로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③ 20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혁신기업 20개, 고급인재 3천명 달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산자부]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2020. 10. 14. 산자부·국토부 등은 정부·지자체·산학연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을 제정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율주행차 실증 동향 파악, ② 정보데이터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③ 국가표준 제정 방안 모색, ④ 표준작업반 운영 논의 등이 있음

[\[참고자료\]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국토부1]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2020. 10. 15. 국무회의에서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방안을 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허가 간소화(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심의 대상 축소,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② 국민·기업 편의제고(생활필수 시설 면적, 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③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④ 저성장 시대 대응(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민불편해소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2] 국무총리(위원장) 주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2020. 10. 15.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여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 부과(수소법 개정), ②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③ 정유·가스社,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 동참, ④ 4개 지자체(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⑤ 내년 수소 관련 예산 대폭 확대(7,977억원, 약35% ↑, 정부안·국비 기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참고자료]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식약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전문성 강화 지원

2020. 10. 16.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GMP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② 코로나 19 관련 사전 GMP 평가 개선방안 분석, ③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모색, ④ QbD 기초기술·예시모델 개발 결과 공개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전문성 강화 지원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기재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13. 기재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와 이 영에 따른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실제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규정 실익이 적은 이 영의 재무기준을 삭제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약처]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임상시험 규제 개선

2020. 10. 14.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상시험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함.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①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②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③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등의 심사·평가 제도를 미국·유럽 등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 등이 있음

> 입법예고 법안

[산자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정안

2020. 10. 12. 산자위는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의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기존 법령의 해석의 명확성 및 체계성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료기기를 인증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 개정, ② 제품판매 이후 3년 이내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③ 인증 신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등이 있음

[금융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정안

2020. 10. 15.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제3조), ②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안 제4조),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5조), ④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⑤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제9조), ⑥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안 제12조) 등이 있음

[기재위]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정안

2020. 10. 13. 기재위는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상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익 보호 강화, ② 조사 절차 및 요건 정비, ③ 상계관세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보완 등이 있음.

[기재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 10. 13. 기재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 제고, ②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산자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광주, 인천, 부산,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미중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3조의4 신설, 제6조, 제7조의4, 제7조의6, 제7조의7 신설, 제9조의7, 제16조, 제27조의2, 제27조의4 신설)

[산자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강점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 및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자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국내복귀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20조)

[산자위]「통상협력촉진법안(정태호의원 등 17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농림수산물, 금융, 통신 서비스 등을 망라해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해왔으나 분야별 분산되어 추진됨으로써 정부 부처, 공기업, 민간 역량을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산자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의원 등 12인)」

기존 법령에서 다루지 않는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권리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여 산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원, 기업의 지능정보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협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